

DB육성 특별법과 법적보호책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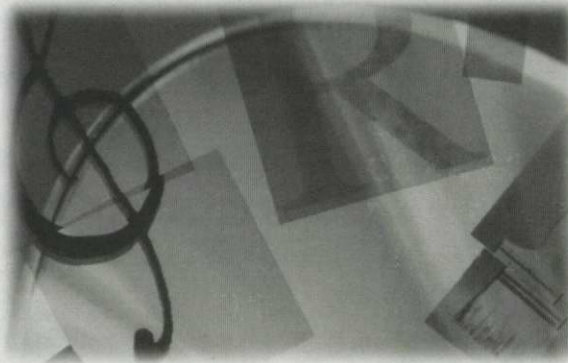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매개체로 자리를 확고히 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기술 발전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저작자가 창조해내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copyright law)의 운영과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섬유를 이용한 초고속의 광통신 기술과 디지털 컴퓨터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의 창조 과정에서부터 복제, 배포(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한번의 키 조작만으로 전세계의 수많은 이용자에게 전송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작물의 창작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콘텐츠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정보 이용의 활성화라는 기반구축 목적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의 법적 '실효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는 크게 ▲이용자들이 다양한 작품에 접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것과 ▲저작자들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원칙의 조화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이러한 두 원칙의 조화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균형이 무너짐으로서 저작권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마다 개정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걸쳐 구축되기 시작한 소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이런 의미에서 두 원칙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들을 초고속정보통신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계획과 더불어 초고속 기반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시장개방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지식산업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변화 추세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효성이 있도록 하여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 중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정보화는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사회를 향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보화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이용 능력 중에서도 특히 가용정보의 개발, 발굴과 연계되어 소위

콘텐츠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화는 정보화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술혁신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보 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작물과 자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획하고, 이러한 기획하에 정보자원을 수집, 정리, 가공, 처리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작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문화물, 창작물, 예술품들은 물론 홍수같이 쏟아지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종합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체계화시킨 모든 창작물과 정보의 집합체이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인 정보력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이다.

더구나 음반업이나 영상업처럼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은 관련된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창작된 저작물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이 튼튼한 데이터베이스업자는 좋은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비롯한 저작 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여러 다양한 정보를 편집배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용자(일반 공중)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일반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은 곧 수익으로 나타나며 이 수익은 데이터베이스업계는 물론 원저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원천이 된다. 한

편, 저작권 측면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부의 간행물이나 자료 역시 누군가가 데이터베이스로 집대성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경우, 경제사회적인 효율의 증대와 편익의 증진은 물론 문혀있던 국내의 정보 자원을 발굴보존한다는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에 미치는 공헌은 비할 바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적보호의 근거와 요건

무형재인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는 직접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 노력을 장려하고, 간접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고 대중에게 유익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정보제공 기반을 굳건히 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으로 정보 자원을 활용케 하는 효과를 갖는다.

바로 이러한 점이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특별하게 보호하려는 시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외국에 비하여 너무도 열악하여 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활성화될 여건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 이전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보호에 못지않게 시급하다.

현 저작권법상에서의 데이터베이

스의 보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보호 요건에 관한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 6조 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게 되어 있으므로 많은 경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기획 및 제작과정에 투입되는 수많은 인력, 노력 및 금전적인 투자에 대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정보들의 가치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가지게 되는 부가가치는 보호되지 않는다.

특히 보호요건으로서 창작성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추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작자가 기울이는 시간과 재정적인 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미흡한 형편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보급확산에 따라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활성화



를 유도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저작권상의 문제는 두가지로 이야기된다. 그 첫째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권리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소재로 이용되는 기존 저작물에 관련된 권리 처리의 문제이다.

권리의 존재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는 ▲저작물성 ▲권리의 귀속 ▲정보의 디지털 데이터화 및 유선 방송사업자의 평가 ▲이용과 관련한 권리 문제 ▲권리 제한 등 다섯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법적인 보호 동향을 살펴 보면, 저작권과 관련한 포괄적인 움직임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특정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저작권 차원에서 움직임은 보면 기술혁신에 따라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요건의 하나인 고정성(fixation)에 컴퓨터 기억장치에 저작물을 입력하는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와 네트워크 발전에 따라 전송 행위(transmission)에 의한 실질적인 배포, 복사, 공연 등의 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저작권 관련한 움직임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에 특정한 법적인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과 미국의 무어헤드(Moorhead)의원의 입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의 지침과 무어헤드 의원의 제

안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요성
2. 제작에 있어서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3. 법적인 보호의 목적과 기술발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사추출배포

이상의 위협에 따른 보호의 시급성에서 공통된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에 대한 정의와 보호의 정도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움직임과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과거 WTO출범에 따라 국내의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예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에 대한 의견이 개진중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인 보호 방법으로 첫째,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거나 둘째,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두 가지 방안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위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할 것인지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호 중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두가지 방안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일선상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단지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잘 발달한 선진 외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별도로 법을 제안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정보 패권에 입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향후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요성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선진국의 움직임이 자국내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 시킴으로써 정보 시대의 핵심적인 요소인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반구조를 견고히 함으로써 비단 데이터베이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21세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틀내에서 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더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나 특성을 저작

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제대로 반영시키기가 어렵다.

데이터베이스에 고유한 특성을 반영시켜 개정을 하다보면,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조항의 신설이 불가피하며, 실질적으로도 저작권과 관련한 다른 사안들도 함께 심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열악한 상태의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법적인 보호의 시급성 측면에서 오히려 별도의 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해석인 판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당한 저작권자가 소를 제기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과 금전적인 투입은 물론 침해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보다 자금력과 교섭력이 뛰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추출만을 통해서도 원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거의 대부분 상실케 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저작물과 달리 온라인 유통이 추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및 창작성 이외에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사실적 정보나 데이터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집대성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유통이 일

반적인 저작물과 달리 정보화 촉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공익성의 차원을 고려하면, 저작권자의 사적 재산권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틀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점의 해결을 위해

사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선택적 대안들을 던져준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문제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포함시키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 문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하나의 특별법에 함께 넣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목적 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 단계별로 하나씩 해결해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규정하고 일반 저작물과 같이 보호하는 방안의 경우, 육성에 관한 규정을 들 수가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만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른 저작물(과학기술 관련 도서, 음반, 영상 자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법체계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저작

권법에는 예외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법원 판례, 공공 자료, 시사보도 등)이 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안도 보호 요건으로서 창작성과 고정성 등의 원칙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투자와 노력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반면에, 하나의 특별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원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하나의 입법을 통해 정보화의 초석이 되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취약함을 해결하는 것은 빠를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보호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다른 목적의 법률이 하나로 추진되기 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은 예상할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원 육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DC**